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 비판

-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0.4.13.

 민주노동총 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는 민주노동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동총 정책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110 | 전송: 02-2635-1134

목차

〈요약〉	1
1. 정부 대응 경과	5
2.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	
1) 개괄	9
2) 주요 대책 세부 내용 검토	12
3. 결론	24

요약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 고용 유지와 노동자 지원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안함.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 하지만 실효적이며 근본적 처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고, 기존의 틀과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숫자만 바꾸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음. ‘전례 없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착 ‘대책은 전례’에서 한발도 못 벗어나고 있음. 특히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음.

첫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4차례에 걸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2.5. ~ 20, 3.18, 4.1, 4.9), ‘100조 원 + α ’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3.24.),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등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발표(3.26.), ‘36조 원 + α ’ 규모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4.8.), 2.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4.8.) 등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지원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에 비해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은 매우 부실하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음. 이는 예산 규모에서 드러남.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면서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에 새롭게 증액된 예산 규모는 모두 합해서 1조 5,783억 원에 불과함.

[표 1] 주요 지원 대책의 증액예산 규모 비교

구분	금융시장 안정화		수출활력 제고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유동성 공급	스타트업·벤처 지원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기업자금 지원	금융시장 안정 유지					
증액 예산	58.3조 원	41.8조 원	36조 원 + α	20조 원	12조 원	2.2조 원	1.58조 원

따라서 천문학적인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이 ‘기업 퍼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 금지’ 등 사회적 책임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

원-해고금지 연계에 대한 계획이 없음. 기업의 선의에 기대 ‘고용 유지’를 읍소하기보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해고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함.

둘째,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고용충격에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한 대책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렸을 뿐,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표 2] 고용보험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되는 계층

구분	계층	사유	개선 과제
제도적 배제	- 특수고용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확대
실질적 배제	-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 원청과의 계약 상태 등에 따른 상시적인 노동력 변동으로 인해 고용유지의무 이행 어려움	- 원청(사용사업주) 기준으로 고용유지 요건 판단. 원청(사용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 조항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고용 노동자,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혜택에서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금액의 수준과 기간이 심각한 고용위기 국면에서 고용유지 인센티브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파견·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우선 ▲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금액을 충분히 상향하는 방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의무를 원청(사용 사업주)이 책임지도록 하거나 원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 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유지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대폭적

인 상향 등이 시급하게 논의·추진되어야 함.

넷째, 무급휴직자와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대대적으로 보강되어야 함. 문재인 정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실직자 대책을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법적·실질적 적용 배제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배제된 모든 실직자가 한시적이거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실업수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은 팬데믹실업지원제도(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도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실업자와 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4.9.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고용 및 실업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방향은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대책’ ▲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실직자 ‘생환안정대책’ 등임.

기업지원대책은 신속하게 이미 발표·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실업대책이 지금에야 논의될 예정이라는 점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각이 ‘기업살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줌. 한참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고용·실업 대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함. 기존 시스템에 갇힐 경우, 절대다수의 취약 노동자 계층이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함.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제도보다 ‘고용유지’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기업에 대한 천

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고 금지와 연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 기업지원과 해고금지·고용유지를 분리하는 순간, 정부는 고용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고용·실업대책은 ‘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임.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중 고용 유지와 노동자 지원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도록 함.

1. 정부 대응 경과

[표 3] 코로나19 문재인 정부 대응 경과

대책	일시	주요 내용	예산 규모
선제방역·특별방역 지원 및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2020.2.5.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대출·보증) 신규 공급, 매출채권 인수 확대 등 ▶ 항공·해운업: 공항사용료 감면,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 등 ▶ 자동차 부품: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등 ▶ 관광·외식업: 한시적 무담보 우대 금융,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약 4조 원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2020.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회복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등 - 초저금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특별금융 지원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년간 경감 등 세 부담 완화 ▶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전통시장 수요창출 노력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도입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가족돌봄휴가 비용 한시 지원 - 취약계층 생계비 융자 ▶ 내수회복 및 투자·수출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 5대 소비쿠폰 등 재정 지원 - 3대 분야 100조 투자 목표 신속 집행, SOC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혁파 가속화 등 투자 제고 	약 16조 원
추경 예산안 국회 확정	2020.3.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초저금리 지원자금 확대 - 저임금노동자 계속 고용 사업장에 임금 보조(1인당 4~7만 원, 4개월)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생보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및 아동수당 대상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 등 4개월 지급 	11.7조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건보료 3개월 50% 감면 ▶ 특별재난지역 후속 조치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재난대책비 지원 -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II	2020.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업·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 (항공) 착륙료 감면 즉시 시행,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 면제 등 -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운행횟수 한시적 축소 등 - (해운)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 선사당 20억 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 (관광) 특별용자 확대,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 2배 확대 등 - (공연) 공연제작비 지원, 관람료 지원 등 - (수출) 수출중소·중견기업 5,000억 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제1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	2020.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 초저금리(1.5% 수준) 대출 공급(12조 원) - 보증 범위와 요건 완화: 특례보증 지원, 긴급소액자금 전액 보증 ▶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 원금 만기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 이자 상환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6개월간 이자 납입 유예 등 ▶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 발행,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 적극 활용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50조 원 + α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202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필요서 대기업 포함)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100조 원 + α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	2020.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16조 원) -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등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4조 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모든 업종에 대한 지원수준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비율(9/10)로 한시적 상향(4,000억 원) 	2.4조 원
한국은행 통화정책	2020.3.9.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3.9. 시행) 및 금리 인하(3.17. 시행) ▶ 기준금리 1.25%→0.75% 인하(3.17.) ▶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3.19. 발표) ▶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증권금융 및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¹⁾ 매입(3.19.~), 국고채 단순매입(3.20.) 	
	2020.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 	

		<p>한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에서 제외 ▶ 공개시장운영 RP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202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휴직노동자 생계비 지원(지자체) (800억 원 우선지원, 월 최대 50만 원) ▶ 무급휴직자·특고 등 긴급복지지원(가구당 월평균 65만 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지자체) (1천억 원 우선지원, 월 최대 50만 원) ▶ 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월 최대 50만 원, 3개월) ▶ (신규) 긴급생계비 용자 신설(최대 200만 원, 무이자. 건설공제기금 활용) ▶ 피해점포 경영회복 및 사업정리·재기 지원(경영회복 300만 원, 폐업지원 200만 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월 50만 원, 6개월)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1,435억 원)(3월 활동비, 27만 원) 	약 6천억 원(추경)																													
업종별 지원 방안 III	20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방안 - (관광)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 25% → 50% 상향, 대·중견기업 임대료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 - (통신·방송) 소상공인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중소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긴급자금 지원 등 - (영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 감면,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 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긴급재난지원금	2020.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 가구</th> <th>2인 가구</th> <th>3인 가구</th> <th>4인 가구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규모</td> <td>400,000원</td> <td>600,000원</td> <td>800,000원</td> <td>1,00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약 7.1조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202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위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 반영하여 지원 여부 최종 판단 <p style="text-align: center;">〈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가구원 수</th> <th colspan="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th> </tr> <tr> <th>직장</th> <th>지역</th> <th>혼합</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88,344</td> <td>63,778</td> <td>-</td> </tr> <tr> <td>2인</td> <td>150,025</td> <td>147,928</td> <td>151,927</td> </tr> <tr> <td>3인</td> <td>195,200</td> <td>203,127</td> <td>198,402</td> </tr> <tr> <td>4인</td> <td>237,652</td> <td>254,909</td> <td>242,715</td> </tr> <tr> <td>5인</td> <td>286,647</td> <td>308,952</td> <td>298,124</td> </tr> <tr> <td>6인</td> <td>326,561</td> <td>349,099</td> <td>343,406</td> </tr> </tbody> </table>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2020.4.8.	<p>▶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p> <p>① 공공부문 “최종구매자” 역할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 : 업무추진비, 계약금액,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 조기 계약 등 선결제·선지급, 비축 가능 물품과 자산 조기 구매 -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 조기 집행 : 하반기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 2/4분기로 조기 집행, 미착공사업 조기 발주와 자재 구입 등 선금 지급 등 - 국가 계약제도 절차 한시적 대폭 완화 : 소액 수의 계약 한도 두 배 상향, 공공계약 절차 축소 등 <p>② 민간부문 내수기반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80%까지 추가 확대, 법인카드 선결제·선구매 촉진(지급금액 1%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세 부담 추가 경감 :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허용, 700만 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취약차주 재기 지원 : 2조 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17.7조 원 + α
		<p>▶ 수출 활력 제고 방안</p> <p>① 수출애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추가 공급 : 수출보험과 보증 감액 없이 만기 연장, 정책금융 추가 공급, 수출기업 보험, 보증료 50% 감면, 긴급유동성 지원 확대 등 - 비대면 수출 지원 - 인적이동과 물류 애로 해소 -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p>②글로벌 공급망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품목 점검대상을 일본에 이어 중국, 미국, 유럽 등 총 338개 품목으로 확대 - 자동차 반도체 등 6대 주력업종 핵심품목 수급 철저 관리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속 대응 : 필수재고물량 확보, 증설투자 유턴 등 중점 유치, 공급망 다변화 및 수입선 대체품목의 신속한 생산투입 지원, 소부장 100대 명장 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 환경규제 일시적 완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기준 159개 → 338개 품목 확대와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한시 유예, 배출권 보고 및 제출의무를 두 달 유예 <p>③ 기업 R&D 부담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최대 2원 이상 경감 				36조 원 + α
		<p>▶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p> <p>① 스타트업·벤처 융자·보증 공급 확대 :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 확대, 특별 대출프로그램 마련, 특례보증 신설 등</p> <p>② 민간 벤처투자 촉진 방안 : 투자 확대 견인, 유망기업에 모태펀드 직접 투자, 벤처펀드 신속한 결성 지원 등</p>				2.2조 원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20.4.9.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 ▶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 IV: 유통·관광·항공업, 스포츠산업, 농수산	
		▶ (토의안건)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함. - 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요약 정리함

2.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

1) 개괄

[표 7]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 개괄

구분	대책	주요 내용	예산 규모
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매출액 15% 감소 등 기존 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신청 가능. ▶ (지원 요건) 전체 노동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 일부. 1일 최대 6만 6천 원(*특별 고용지원업종 1일 한도 7만 원). 연간 최대 180일.	4,000억 원 추가 증액 (1,004억 원 → 5,004억 원)

1) Repurchase agreement : 채권 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됨(국회입법조사처, 2020:49).

2) “2020년 3월 26일 한국은행은 RP 매입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함으로써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국회입법조사처, 2020 : 4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고용유지조치 기간</th> <th style="width: 20%;">대상</th> <th style="width: 65%;">일반 업종</th> </tr> <tr> <td rowspan="2">기존</td> <td>우선지원 기업</td> <td>2/3</td> </tr> <tr> <td>대기업</td> <td>1/2 또는 2/3* (*노동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td> </tr> <tr> <td rowspan="2">2.1.~3.31.</td> <td>우선지원기업</td> <td>2/3→3/4</td> </tr> <tr> <td>대기업</td> <td>1/2→2/3</td> </tr> <tr> <td rowspan="2">4.1.~6.30.</td> <td>우선지원기업</td> <td>3/4→9/10</td> </tr> <tr> <td>대기업</td> <td>1/2→2/3</td> </tr> <tr> <td rowspan="2">7.1.~7.31.</td> <td>우선지원기업</td> <td>2/3→3/4</td> </tr> <tr> <td>대기업</td> <td>1/2→2/3</td> </tr> </table> <p>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20.3.16.~9. 15.인 경우, 우선지원기업 3/4→9/10, 대기업 2/3→2/3(노동시간 단축률이 50% 초과 시 3/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 산업별로 상시 노동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300인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200인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인 이하</p> </div>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	일반 업종	기존	우선지원 기업	2/3	대기업	1/2 또는 2/3* (*노동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1.~3.31.	우선지원기업	2/3→3/4	대기업	1/2→2/3	4.1.~6.30.	우선지원기업	3/4→9/10	대기업	1/2→2/3	7.1.~7.31.	우선지원기업	2/3→3/4	대기업	1/2→2/3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	일반 업종																								
기존	우선지원 기업	2/3																								
	대기업	1/2 또는 2/3* (*노동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1.~3.31.	우선지원기업	2/3→3/4																								
	대기업	1/2→2/3																								
4.1.~6.30.	우선지원기업	3/4→9/10																								
	대기업	1/2→2/3																								
7.1.~7.31.	우선지원기업	2/3→3/4																								
	대기업	1/2→2/3																								
	<p>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재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지원 요건) 고용보험 가입자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 (지원 내용)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4개월(2월~5월) 동안 1인당 월 4~7만 원의 임금 지원. 유급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사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 (시행 시기) 4.6.부터 추가 지원 시작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th> <th style="width: 30%;">기존</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30%;">코로나 위기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5인 미만</td> <td>1인당 월 11만 원</td> <td>→</td> <td>1인당 월 18만 원</td> </tr> <tr> <td>5~10인</td> <td>1인당 월 9만 원</td> <td>→</td> <td>1인당 월 16만 원</td> </tr> <tr> <td>10~30인</td> <td>1인당 월 9만 원</td> <td>→</td> <td>1인당 월 13만 원</td> </tr> </tbody> </table>		기존		코로나 위기 이후	5인 미만	1인당 월 11만 원	→	1인당 월 18만 원	5~10인	1인당 월 9만 원	→	1인당 월 16만 원	10~30인	1인당 월 9만 원	→	1인당 월 13만 원	<p>(추경) 4,964억 원 증액 (2조1,647억 원 → 2조 6,611억 원)</p>							
	기존		코로나 위기 이후																							
5인 미만	1인당 월 11만 원	→	1인당 월 18만 원																							
5~10인	1인당 월 9만 원	→	1인당 월 16만 원																							
10~30인	1인당 월 9만 원	→	1인당 월 13만 원																							
<p>노동자 지원</p>	<p>가족돌봄휴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계속근로 6개월 이상 노동자 신청 가능. ▶ (지원 요건) ①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을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최대 50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법정(남녀고용평등법) 최대 휴가 사용일 수는 1년 10일. 	<p>530억 원</p>																							

		구분			1차 대책(2.28.)	2차 대책(4.9.)		
		지원 일수 (노동자 1인당)	5일		10일			
		지원 금액 (1일)	5만 원		동일			
		최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 원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무급휴직 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설정 ▶ (지원 요건)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 일부 지자체 1개월 지급) 					2,346억 원 (*수혜 예상 인원: 26만 7천 명)	
	특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 (지원 요건) : 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지원 내용) :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 (* 일부 지자체 1개월 지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일자리 제공: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 1인당 월 180만 원 지급, 9개 광역자치단체(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훈련생 지원: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 월 12만 원, 2개월.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 						
긴급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확대. ▶ (지원 요건)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금융재산기준 - 5백만 원 (* 금융·재산기준 완화) ▶ (지원 내용) :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월평균 65만 원 1개월 우선 지원 후, 최대 6개월까지 가능 						2,000억 원 증액 (총3,656억 원)	
	가구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건설일용노동 자 긴급생활안정 자금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건설일용노동자 ▶ (지원 요건) :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피공제자 ▶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2백만 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4월~8월 한시적 운용.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2020.1.1.~2020.12.31. 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3단계에 진입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신청 가능. 단,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508억 원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요건)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상호의무협약 체결.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 구직활동 범위 확대: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지원 내용) : 월 50만 원, 최대 3개월. 단, 65세 이상 월 20만 원(최대 3개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 ▶ (지원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5,699,009원, 2020년) 가구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지원 내용) : 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요건 완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 가능(4.1.~)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 원) 선지급 	1,435억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3.16.) (* 2020년 1월 말 기준, 4개 업종의 사업장과 노동자 수는 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 ▶ (지원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주</td> <td>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건강보험 연체료 미부과 및 보험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td> </tr> <tr> <td>노동자</td> <td>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 상환 기간 연장 △ 소득요건 완화 △ 학자금 용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대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등</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건강보험 연체료 미부과 및 보험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 상환 기간 연장 △ 소득요건 완화 △ 학자금 용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대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등	
구분	내용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6개월 연장, 건강보험 연체료 미부과 및 보험의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시 △ 상환 기간 연장 △ 소득요건 완화 △ 학자금 용자 확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대상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 소득요건 면제 등							

*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요약 정리함

2) 주요 대책 세부 내용 검토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① 현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

금³⁾의 ▲ 지원 요건 완화 ▲ 지원 금액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함.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함. 지원 금액은 기존에 휴업·휴직수당의 1/2 ~ 2/3에서 2/3 ~ 9/10까지 상향함. 1일 한도는 6만 6천 원이며, 1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표 1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기존	변경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자	- (변경 없음)
	- 매출액·생산량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사업 규모 축소조정, 자동화 등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 변경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전체 노동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시행한 경우	- (변경 없음)

[표 1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상향

구분	대상	일반 업종	
기존	우선지원 기업	2/3	
	대기업	1/2 또는 2/3* (* 노동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변경	2.1.~3.31.	우선지원기업	2/3→3/4
		대기업	1/2→2/3
	4.1.~6.30.	우선지원기업	3/4→9/10
		대기업	1/2→2/3
	7.1.~7.31.	우선지원기업	2/3→3/4
		대기업	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⁴⁾,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20.3.16.~9.15.인 경우, 우선지원기업 3/4→9/10, 대기업 2/3→2/3(노동 시간 단축률이 50% 초과 시 3/4)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규모는 애초 1,004억 원이었는데, 추경(3.17.)을 통해 4,00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5,004억 원임. 정부는 최대 30만 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3. 27. 현재, 22,360개소, 18만 명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신고됨. 한편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은 3,102억 원이 집행됨.

3)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임.

4)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3.16.~)

② 쟁점과 개선 과제

첫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850만 명 노동자는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됨.

- 「2020년 2월 고용보험통계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절반이 약간 넘는 51.5%이며, 전체 임금노동자(2,056만 명) 대비 비중은 67.8%(1,380만 명)에 불과함.⁵⁾

- 정홍준(2018)에 따르면⁶⁾,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규모는 2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8.2%). 이 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대략 50만 명임. 따라서 약 1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됨.

-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170만 명)와 임금노동자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680만 명)를 합한 850만 명의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됨.

둘째, 고용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고용위기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함.

- 법적으로는 파견·용역·사내하청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단,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용역·하청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함.

- 하지만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사업체는 대개 여러 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수탁하고 있어서 노동력 변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남. 이로 인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종료 이후 1개월간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음.

- 따라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지 요건을 사용 사

5) 고용정보원, 2020년 2월 고용보험통계 현황, 2020.3.30.

6) 정홍준·장희은(201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의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업체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는 사용자업주가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파견·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김유선(2019)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파견·용역 노동자는 약 80만 명⁷⁾이며, 300인 이상 대기업(고용형태공시제 대상기업)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8만 명⁸⁾에 달함.

셋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자체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의 설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⁹⁾ 휴업·휴직수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다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움.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제46조 제1항)¹⁰⁾과 유급휴가제도(제60조)¹¹⁾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2018년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해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

7) 김유선(201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찰 부가조사(2019년 8월)’ 결과-」,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8) 김유선·박관성(2019),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이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9) 해고, 노동시간, 각종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에 관한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11)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8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9%에 달함.

[표 16] 주요 제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제도명	관련 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부당해고 금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
휴업	근로기준법	×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
연장 노동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
휴게	근로기준법	○
주휴일	근로기준법	○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
균등 처우,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

넷째,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되지만, 휴업수당 자체가 임금의 70%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의 전체 임금대비 비중은 63%에 불과함. 또한,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임.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이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원 금액이 낮고 지원 기간도 짧다는 문제점이 있음. ‘해고의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원 수준을 임금대비 70~80% 수준까지 상향하고, 지원 기간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저임금 노동자 계속 고용 영세자영업자 임금보조

① 현황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활용하여, 저임금노동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인당 월 4~7만 원의 임

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이에 따라 기존 1인당 월 9만 ~ 11만 원의 지원 금액은 월 13만 ~ 18만 원으로 상향됨.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함.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20.2월 ~ 12월)으로 애초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액 지원함.

[표 17] 저임금노동자 계속 고용 영세자영업자 임금보조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재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지원 요건	-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2020년 기준, 월 215만 원 이하) - 지원금 신청 이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준수 -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지원 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 * 지원 대상자를 퇴직시킬 경우, 매출액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 소명되면 계속 지급 / 소명되지 않으면 지급 종료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 중단		
지원 수준		기존	변경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11만 원	1인당 월 18만 원
	5~9인 사업장	1인당 월 9만 원	1인당 월 16만 원
	10~29인 사업장	1인당 월 9만 원	1인당 월 13만 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노동시간(노동일)에 비례하여 지원함. ¹²⁾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는 애초 2조 1,647억 원이었는데, 추경(3.17.)을 통해 4,964억 원이 증액되면서 2조 6,611억 원으로 확대됨. 2019년 12월 20일 기준으로, 83만 개 사업장, 343만 명 노동자에게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됨.

12)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 ~ 30시간 이상 8만 원, 3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6만 원, 2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4만 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노동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9만 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만 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만 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만 원

② 쟁점과 개선 과제

첫째, 일자리안정자금은 평균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수준이 최대 1인당 월 13만 원~18만 원으로 낮은 편임.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재정 부담을 부분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고용위기 국면에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¹³⁾, 2019년 기준 임금총액 평균은 1~4인 사업장 213만 4천 원, 5~9인 사업장 282만 1천 원, 10~29인 사업장 330만 9천 원 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금액은 평균 임금총액 대비 최대 8.4%(1~4인), 5.7%(5~9인), 3.9%(10~29인)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함.

-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넘어,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계속 고용을 유인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의 대폭적인 상향이 필요함.

둘째,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 요건으로 하므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제도에서 법적·실질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3) 가족돌봄휴가 지원

① 현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목적으로 1월 20일 이후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일(1일 지원금액 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함.

1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5

-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노동자가 가족과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는 목적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다만 법으로 유급휴가를 강제하지는 않음.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까지 사용 가능함.

- 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음.

[표 18]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지원대상	- 1월 20일 이후 무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 계속근로 6개월 이상 노동자 신청 가능		
지원 요건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 연기를 시행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 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 최대 50만 원(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 지원. * 법정(남녀고용평등법) 최대 휴가 사용일 수는 1년 10일.		
	구분	1차 대책(2.28.)	2차 대책(4.9.)
	지원 일수(노동자 1인당)	5일	10일
	지원 금액(1일)	5만 원	동일
	최대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최대 25만 원	노동자 1인당 최대 50만 원

예산 규모는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 원에 316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530억 원임.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② 쟁점과 개선 과제

첫째, 가족 구성원의 질병 또는 보육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족돌봄의 책임을 져야 하는 노동자에게 휴가와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

병 확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대책임.¹⁴⁾

- 하지만 보육시설의 휴업과 학교 개학연기가 2달 넘게 지속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하더라도 가족돌봄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기간과 비용 지원은 턱없이 부족함. 휴가 일수와 지원 비용의 확대가 필요함.

- 이탈리아 사례는 시사적임.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020년 3월 5일 이후부터 최대 15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함. 또한, 장애가 있는 가족 또는 친인척을 돌보는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12일로 연장함.

둘째,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근거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계속근로 6개월 미만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라는 점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하고, 자녀와 고령의 가족을 둔 모든 취약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돌봄제도 도입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영유아, 초중고등학교의 휴업 및 온라인 수업, 어르신의 야외 활동 불가로 인한 여가와 돌봄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가족돌봄수당 지급”¹⁵⁾이 검토될 수 있음.

14)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4.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확대”에 따르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 1백 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함. 여성 신청자 69.0%(36,728명), 남성 신청자 31%(16,502명)의 분포를 보임.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명)임.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39.1%)으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으로 나타남.

15) 송인주·안기택·김정현·오문준·이경란·이형미(2020), 「긴급점검, 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사회정책」, 서울시복지재단.

4) 고용안전망 틀 밖의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조치

① 현황

문재인 정부는 3.30.(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0여만 명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함. 무급휴직·휴가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노동자, 청년, 노인 등 기존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안정 대책임.

[표 20]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조치 개괄

구분	대책	적용 요건	수혜자 예상	예산 및 재원
무급휴업·휴직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월 50만 원 *최장 2개월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무급휴직자가 기본 대상 - 지자체 사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 지원 가능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노동자	- 10만 명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 800억 원 우선지원
	-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가구당 65만 원 *1개월 우선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¹⁶⁾ -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금융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 추경 2,000억 원 증액
특고 ¹⁷⁾ ·프리랜서	- 고용생활안정 지원 *월 50만 원 *최장 2개월	-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직종이어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 10만 명 → 14만 2천 명 ¹⁸⁾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 1,000억 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3개월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¹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 1만 6천 명	- 추경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 원
	- 긴급복지지원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긴급복지지원법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 *1개월 우선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기간 연장 가능	-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금융 :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추경 2,000억 원 증액
건설일용노동자	- 긴급생활안정 대부제도 신설 *최대 2백만 원 *4월~8월 한시	-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4월 중순~) -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피공제자	- 8만 7천 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월 50만 원 *6개월	- (현행)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개선)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 5만 명	-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노인	-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1개월분 활동비 27만 원	- 사업 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 원) 선지급**(4월 초)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 (동의서 작성)	- 54만 3천 명	

* 관계부처 합동,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요약 정리함

16)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317,896원, 2인 가구 : 2,243,985원, 3인 가구 : 2,902,933원, 4인 가구 : 3,561,881원, 5인 가구 : 4,220,828원, 6인 가구 : 4,879,776원, 7인 가구 : 5,542,286원

17)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고 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여기에는 대리 운전·버스 기사 등 운송 관련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교육 관련 노동자, 예술인 등 여가 관련 노동자 등 3가지 유형이 대표적 예시로 포함됨.

18) 부산, 인천 등의 지자체에서 지원 기간을 1개월로 하는 대신 받는 노동자 수를 늘림.

19)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적용. 매월 50만 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 여부 점검 후 지급. 이 제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면서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시적으로 재도입됨.

② 쟁점과 개선 과제

첫째, 정부가 내놓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의 예상 수혜자 대략 15만 8천 명가량인데, 이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규모(약 220만 명)²⁰⁾의 7%에 불과함.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절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는 정부 대책에서 원천 배제됨.

둘째, 발표된 특수고용노동자 지원대책도 문제점이 많음.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은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일부 지자체 1개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 금액과 기간이 생계위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회성 대책임.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행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득기준 등이 엄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신청하려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²¹⁾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60%(2020년 4인 가구 기준, 285만 원) 이하여야 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복지 제도인데, 실직과 소득감소 등도 ‘위기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 하지만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75%(2020년 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18,800만 원, 중소도시 11,800만 원,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 보증금, 약간의 저축이나 예금만 있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20) 정홍준·장희은(201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의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 특수고용 노동자 중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 직종은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화물차주 포함),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 교사, ④ 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 택배·퀵서비스 기사, ⑦ 신용카드모집인, ⑧ 대리운전원, ⑨ 대출모집인,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 방문교사, 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으로 제한됨.

셋째, 정부는 무급휴직자 대책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50만 원, 최장 2개월)과 실직 등을 위기사유로 인정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무급휴직자를 포함하는 것 등임.

-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에 따른 무급휴직자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기업 규모(예를 들어, 50인 미만)와 소득기준(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급휴직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포괄 범위가 협소하며, 전국적으로 수혜 인원이 10만 명에 불과함.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엄격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서, 위기 시 포괄적인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함.

- 위기가 심화할수록 무급휴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큼. 하지만 무급휴직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므로,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무급휴직자를 부분 실업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결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 하지만 실효적이며 근본적 처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고, 기존의 틀과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숫자만 바꾸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음. ‘전례 없는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착 ‘대책은 전례’에서 한발도 못 벗어나고 있음. 특히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 속도, 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음.

첫째,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4차례에 걸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방안(2.5. ~ 20., 3.18., 4.1., 4.9.), ‘100조 원 + α ’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3.24.),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 등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발표(3.26.), ‘36조 원 + α ’ 규모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4.8.), 2.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벤처 지원방안(4.8.) 등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지원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에 비해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대책은 매우 부실하거나 거의 다뤄지지 않음. 이는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면서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에 새롭게 증액된 예산 규모는

모두 합해서 1조 5,783억 원²²⁾에 불과함.

[표 21] 주요 지원 대책의 증액예산 규모 비교

구분	금융시장 안정화		수출활력 제고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스타트업·벤처 지원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
	기업자금 지원	금융시장 안정 유지					
증액 예산	58.3조 원	41.8조 원	36조 원 +α	20조 원	12조 원	2.2조 원	1.58조 원

따라서 전문학적인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이 ‘기업 퍼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고 금지’ 등 사회적 책임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원-해고금지 연계에 대한 계획이 없음. 이탈리아의 60일(3월~5월 중순)간 해고 및 구조조정 금지 조치 등. 기업의 선의에 기대 ‘고용 유지’를 읍소하기보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해고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함.

둘째,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고용충격에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한 대책이다 보니 부분적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을 늘렸을 뿐, 해당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표 22] 고용보험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되는 계층

구분	계층	사유	개선 과제
제도적 배제	- 특수고용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 고용보험제도 적용 범위 확대
실질적 배제	-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 원청과의 계약 상태 등에 따른 상시적인 노동력 변동으로 인해 고용유지의무 이행 어려움	- 원청(사용사업주) 기준으로 고용유지 요건 판단. 원청(사용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금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 조항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2) 고용유지지원금 확대(4,000억 원 증액), 일자리안정자금 확대(4,964억 원 증액),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530억 원), 무급휴직자·특고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2,346억 원), 긴급복지지원(2,000억 원 증액),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8억 원 증액),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1,435억 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고용 노동자,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혜택에서 법적 혹은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 금액의 수준과 기간이 심각한 고용위기 국면에서 고용유지 인센티브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파견·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계층에 대한 획기적인 고용유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우선 ▲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을 충분히 상향하는 방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의무를 원청(사용사업주)이 책임지도록 하거나 원청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 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유지에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대폭적인 상향 등이 시급하게 논의·추진되어야 함.

넷째, 무급휴직자와 실직자에 대한 대책이 대대적으로 보강되어야 함. 문재인 정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실직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법적·실질적 적용 배제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모든 실직자가 한시적이거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은 팬데믹실업지원제도(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도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실업자와 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4.9.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고용 및

실업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정부가 제시한 대책과 방향은 ▲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대책’ ▲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임.

기업지원대책은 신속하게 이미 발표·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실업대책이 지금에야 논의될 예정이라는 점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각이 ‘기업살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보여줌. 한참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고용·실업 대책’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함. 기존 시스템에 갇힐 경우, 절대다수의 취약 노동자 계층이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함.

마지막으로 그 어떤 제도보다 ‘고용유지’를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지원을 해고 금지와 연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함. 기업지원과 해고금지·고용유지를 분리하는 순간, 정부는 고용에 관한 사회적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고용·실업대책은 ‘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것.